

〈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 20171267]

(주)하나에프씨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 2017. 11. 02]

hana3334@jeezle.co.kr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 2023. 12. 26]



정 보 공 개 서

[(주)하나에프씨]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주)하나에프씨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주 소 :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19, 지하1층 B104호(합정동, 합정오피스빌딩 제2호)]

[대표전화번호 : 1599-3334]

[대표팩스번호 : 02)3143-3345]

[가맹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 1599-3334]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X. 상담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개설절차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사용 브랜드		주 소			
(주) 하나에프씨	비즈비즈 외5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19, 지하1층 B104호(합정동, 합정오피스빌딩 제2호)			
	설립일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17.6.21	2017.6.21	2017.6.21	김상철	1599-3334	02)3143-3345
	법인등록번호		110111-6437697		사업자등록번호	581-81-00740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최근 3년 동안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소		
사용인 (임원)	김상철(대표이사)	비즈비즈 외5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19, 지하1층 B104호(합정동, 합정오피스빌딩 제2호)		
	안성자((사내이사)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천소미(사내이사)		김상철	1599-3334	02)3143-3345
	김미숙(감사)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인수·합병 여부	기업명	영업표지	인수·합병일	주 소	대표자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을 인수합	해당없음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의 가맹사업 일부를 인수합	해당없음				
다른 기업에 가맹사업 일부를 인도합	해당없음				
다른 기업이 가맹본부를 합병합	해당없음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비츠비츠]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비츠비츠	
상 호	비츠비츠 _____점	사업자등록 시에 계약서에 지정된 상호를 사용하시기 바라며, 가맹점사업자가 임의로 상호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보통 지역명을 사용함)
상표(서비스표)		출원일자 : 2017년 03월 22일 출원번호 : 40-2017-0036394 지정상품 :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오리고기, 인조육, 식육중개업, 간이식당업, 간이음식점업, 관광음식점업, 극장식주점업, 레스토랑업, 뷔페식당업, 서양음식점업, 일반음식점업, 식당채 인업,.. 등등 (제29류, 제35류, 제43류에 속한 상품 및 서비스)
광 고	온라인광고 신문광고 방송매체 홍보	온라인 : 인터넷, 모바일광고 신문광고 :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방송매체 : 방송광고 및 홍보
그 밖의 영업표지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 이익	당기 순이익
2021년	523,872	2,667,408	-2,143,535	425,791	-788,756	-972,418
2022년	374,769	2,651,262	-2,276,493	822,146	-240,854	-132,957
2023년	861,266	958,628	-97,361	1,860,351	-258,721	-270,868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빗뜰, 오히루, 미소만발치킨&떡볶이는 가맹점이 없습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 임원	김상철	대표이사	2017. 6.~현재	(주)하나에프씨 대표이사	회사 업무 총괄
	안성자	사내이사	2017. 6.~현재	(주)하나에프씨 이사	회사경영 전반
	천소미	사내이사	2023.12. ~ 현재	(주)하나에프씨 이사	회사경영 관리
	김미숙	감사	2023.12. ~ 현재	(주)하나에프씨 감사	회사업무 감사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3년 12월 31일	2	2	9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 하였거나 경영하고 있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가맹본부	주식회사 하나에프씨	가맹사업경영	2019.05.28.~현재	지즐미육회관(등록번호: 4520130000740)이라는 영업표지의 한식사업 경영
		가맹사업경영	2019.05.28.~현재	빛뜰(등록번호: 4520130000741)이라는 영업표지의 한식사업경영
		가맹사업경영	가맹사업 예정	오하루(등록번호: 4020200039423)이라는 영업표지의 분식사업경영
		가맹사업경영	가맹사업 예정	미소만발치킨&떡볶이(등록완료 :20211364)라는 영업표지의 기타외식사업 경영
		가맹사업경영	2023.10.17. ~ 현재	지즐한우오마카세(등록번호:202 31263)이라는 영업표지의 한식사업 경영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비즈비즈 (상표권)	가맹점운영을 위한 필요한 범위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권한	등록일자 : 2017.10.26	등록번호 : 4012975200000	안성자	2027.10.26. (2027.10.26)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은 권리자로부터 사용에 대한 권리를 부여받아서 사용하고 있으며, 지식재산권에 대한 사항이 출원 중인 경우에는 관계법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II. 가맹본부의 [비즈비즈] 가맹사업 현황

1. [비즈비즈] 을 시작한 날: 2018년 01월 01일
[비즈비즈] 의 직영점을 시작한 날 : 해당없음

2. [비즈비즈]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하나에프씨	비즈비즈	김상철	2017.10. ~2018.09.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28,(창천동490번지)홍익사랑빌딩304호
	비즈비즈	김상철	2018.09. ~2020.03.01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136, 2층 201호(성산동, 신안빌딩)
	비즈비즈	김상철	2020.03.02.~2023.02.27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156,1801호(동교동, LG펠리스빌딩)
	비즈비즈	김상철	2023.02.28.~현재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19, 지하1층 B104호(합정동, 합정오피스빌딩 제2호)

3. 해당 가맹사업의 업종

영업표지	업종	
비즈비즈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서양외식	스테이크, 파스타, 피자, 규카츠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비즈비즈]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1.12.31.			2022.12.31.			2023.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2	2	-	3	3	-	3	3	-
서울	1	1	-	1	1	-	1	1	-
부산	-	-	-	-	-	-	-	-	-
대구	-	-	-	-	-	-	-	-	-
인천	-	-	-	-	-	-	-	-	-
광주	-	-	-	-	-	-	-	-	-
대전	-	-	-	1	1	-	1	1	-
울산	-	-	-	-	-	-	-	-	-
세종	-	-	-	-	-	-	-	-	-
경기	-	-	-	-	-	-	-	-	-
강원	-	-	-	-	-	-	-	-	-
충북	-	-	-	-	-	-	-	-	-
충남	-	-	-	-	-	-	-	-	-
전북	-	-	-	-	-	-	-	-	-
전남	-	-	-	-	-	-	-	-	-
경북	1	1	-	1	1	-	1	1	-

경남	-	-	-	-	-	-	-	-	-
제주	-	-	-	-	-	-	-	-	-

5. 바로 전 3년간 [비츠비츠] 가맹점 수 (직영점 제외)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	2	-	-	-	-	2
2022	2	1	-	-	-	3
2023	3	-	-	-	-	3

6. [비츠비츠]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업종	가맹점/직영점의 수		
					2021.12.31	2022.12.31	2023.12.31
가맹본부	(주)하나에 프씨	지즐미육회관	20190473	한식	3/0	6/0	6/0
		빛뜰	20190473	한식	0/0	0/0	0/0
		오하루	20200746	우동	0/0	0/0	0/0
		미소만발치킨 &떡볶이	20211364	기타외식	0/0	0/0	0/0
		지즐 한우오마카세	20231263	한식	-	-	2/1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 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지역	2023년 말 가맹점 수	2023년 가맹점 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연간 평균 매출액	3.3m2당	상한	3.3m2당	하한	3.3m2당	
전체	3	356,188	1,868	867,119	32,115	65,209	130	3곳 산정
서울	1	-	-	-	-	-	-	5곳 미만
부산	-	-	-	-	-	-	-	-
대구	-	-	-	-	-	-	-	-
인천	-	-	-	-	-	-	-	-
광주	-	-	-	-	-	-	-	-
대전	1	-	-	-	-	-	-	5곳 미만
울산	-	-	-	-	-	-	-	-
세종	-	-	-	-	-	-	-	-
경기	-	-	-	-	-	-	-	-
강원	-	-	-	-	-	-	-	-
충북	-	-	-	-	-	-	-	-

충남	-	-	-	-	-	-	-	-
전북	-	-	-	-	-	-	-	-
전남	-	-	-	-	-	-	-	-
경북	1	-	-	-	-	-	-	5곳 미만
경남	-	-	-	-	-	-	-	-
제주	-	-	-	-	-	-	-	-
세종	-	-	-	-	-	-	-	-

8. [비즈비즈]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비즈비즈]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년	3	1.519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비즈비즈] 가맹점 관리를 위하여 따로 [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2023년]에 [비즈비즈]과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106,200	-	-	
광고	(비공개)	연중	106,200	-	-	
	(비공개)	연중		-	-	
판촉	-	-	-	-	-	

☞ 당사는 비즈비즈 외에 다른 가맹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 금액 중 비즈비즈에 사용한 비용은 적을 수 있습니다.

11. 가맹금 예치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하나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주소	전화번호
하나은행	서울시 중구 을지로1가 101 하나은행BD	1599-1114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하나은행] 에 [계약 체결 다음 날까지] 예치 신청 하여야 합니다. [예치방법은 하나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다운받아 설치한 후 “예치 서비스”를 클릭한 다음 (주)하나에프씨를 찾아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귀하는 또한 [하나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ul style="list-style-type: none">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
|---|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해당 사항 없음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시정조치 대상	의결번호 (사건번호)	위반법령	위반내용 (위반법조)	조치일자	조치내용
해당사항 없음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원고	피고	사건번호	최종 법원명	판결(선고)일자	청구 취지 및 내용	판결 또는 화해 내용
해당사항 없음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피고	사건번호	선고 법원	선고 일자	죄명 및 범죄사실	선고 내용
해당사항 없음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비즈비즈]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계약이행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비용	가맹본부 및 협력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16,500]				
가맹비	11,000	계약 체결 후 20일 이내	영업 개시 이전에 계약 해지시	가맹점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해지된 경우	반환할 경우 미경과 잔여계약기간을 일할로 계산한 금액을 반환
교육비	5,500	교육 시작 7일 이전	교육시작1일 이전에 계약 해지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2) 계약이행보증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잔존채무를 정산한 후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부가세 없음)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계약이행보증금	3,000	계약 체결 후 20일 이내	본사가 공급 물품 미지급금 및 파손, 피해 등에 대한 정산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합계	19,500

가맹비	11,000
교육비	5,500
계약이행보증금	3,000 (부가세 없음)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15]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6 m² 기준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3.3m ² 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 조건	비고
임차보증금	건물주	추정불가		건물주와 협의		
영업권비(권리 금)	전임차인	추정불가		전 임차인과 협의		
인테리어 (점포 내장공사)	(비공개)	46,400	2,320	공사 1일 이전	공사발주전 계약취소	자체공사시 감리비 (시공비용의 20%)- 가맹계약서18조 3항
주방설비/집기 홀집기/그릇 의탁자	(주)하나에프 씨	47,740	2,387	가맹계약후 별도 지정	공사발주전 계약취소	
판촉/비품/홍보	(주)하나에프 씨	3,300	165	가맹계약후 별도 지정	발주전 계약취소	
간판	(주)하나에프 씨	별도산정		설치 1일 이전		실측 후 금액산정
냉/난방기	미지정	별도산정		-	공사발주전 계약취소	실측 후 금액산정
주문 POS	(비공개)	월 20.0				오더포스 별도구매
외장 및 외부 인테리어	-	추정불가		인테리어 업체와협의		
철거비	-	추정불가		철거 업체와협의		
각종인허가비용	-	추정불가				
가스배관	-	추정불가		해당 업체와협의		
소방	-	추정불가		소방설비업체와 협의		
전기승압	-	추정불가		전기업체와협의		
화장실	-	추정불가		인테리어업체와 협의		
지방,소핑몰매장	(주)하나에프 씨	인테리어공사비의 10%		공사 1일 이전		
최초 공급 상품 비용	(주)하나에프 씨	5,500	275	공급일	상품미공 급시	잔금 미정산시 미입고
총계		최소:102,940 (66m ² 기준)	5,147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또한 상기 내역은 점포상황 및 특성에 따라 다소 변경 될 수도 있습니다.]

[위 표의 3.3m²당 금액의 산정은 기준면적을 기준으로 산술적으로 나눈 금액이며, 실제로는 그 성질상 면적에 비례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표시된 금액과는 다소 차이가 발생합니다. 또한 가맹점주의

요청에 따라 직접 시공이 가능합니다. 다만, 당사는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직원을 파견하여 감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에게 **감독(감리)비용으로 총 시공비용(부가세별도)의 2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귀하는 당사와 도면 협의 및 비즈비즈의 특기시방서에 따라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직접 시공 시 비용은 차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희망자	담당자 배정 → 상담을 통하여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파악 → 현장 조사 등 시장 분석 →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희망자에게 동의 여부를 구함 ※ 가맹희망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새로운 입지를 정할 수 있으나 영업이 늦어지는데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만18세 이상일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비즈비즈]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상기 내역은 점포 상황 및 특성에 따라 다소 변경 될 수도 있습니다.)

8) 한편, 귀하가 당사에 납부하는 가맹금은 분납할 수 없으며, 일시불로 납입하셔야 합니다.

구분	총액	계약금	중도금(1)	중도금(2)	중도금(3)	잔금
금액(천원)	해당사항 없음. 일시납입					
납부일						
비고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분담금에 대한 세부 분담기준은 [34]쪽에 나와 있습니다.

(단위: 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로열티	가맹본부	가맹점 매월 상품총매출액의 2~4% (계약서 참조)	매월 15일날	월단위 입금으로 반환 없음 (CMS 자동 이체 으로 처리)	영업표지, 상표 등 지식재산권의 사용대가, 경영지 원, 식자재 전용상품 축소 등의 대가로서 소멸성임	가맹사업을 위한 필요 또는 운영방침과 각 가맹점의 영업방식 등에 따라 로열티 기준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보수교육 특별교육	가맹본부	시간에 따른비용정산	교육 시작 전	반환되지 않음.	교육이수시 반환되지 않음.	
광고분담금	가맹본부	월 330,000원				CMS 자동이체입금
교육훈련비	가맹본부	시간에 따른 비용정산	교육시작 10일이전			교육필요시 지급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가맹본부	추정불가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교체비용은 당사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비용	가맹본부	추정불가	교체·보수 후 5일이내			교체·보수 필요시 시설, 기기 등의 내구연수 등을 감안하여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
점포환경개선비용	가맹본부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43페이지 참조
POS 사용료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 (비공개)	월 20,000원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와 가맹점간 계약서 기준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 18%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광고 분담금 금액과 POS업체 선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수 있습니다)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3)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은 추정금액으로 2023년도에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한 구입요구품목의 매출액에서 해당 품목의 구매금액 합을 뺀 차액을 6개월 이상 운영한 가맹점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 ① 당사는 가맹점 사업자의 운영관리 측면에서 손익계산서를 요구하여, 그와 관련된 컨설팅을 할 수 있으며, 재고 관리에 대한 부분도 감독할 수 있다.
- ② 당사는 가맹점의 매출 관리를 위해 POS뿐만 아니라 카드 단말기 등의 매출을 열람 할 수 있다.
- ③ II.가맹본부의 [비즈비즈]가맹사업현황 중 6.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으로 인해 가맹점에서는 POS 매출을 누락 할 수 없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가맹비	5,500	재계약 체결시점	반환되지 않음	재계약 시 가맹본부의 상표권 사용대가	신 규 점 의 50% 수준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 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가맹점 계약기간동안 잔여일수로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영업양수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양도인의 가맹사업 잔여 계약기간 동안 가맹비가 면제됩니다. 단, 본 계약에 규정된 교육비 등 다른 비용은 부담하여야 합니다. 영업양수인의 계약기간은 양도인의 가맹사업 잔여 계약기간으로 합니다. 단, 영업양수인은 가맹본부의 동의를 얻어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신규 가맹계약은 초기 신규 계약 비용과 동일하게 비용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32] 쪽에 나와 있습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이 종료됨과 동시에 “상호, 상표 등” 비즈비츠의 사양에 의하여 설계된 시설, 인테리어 및 구조물, 기타 비즈비츠의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일체의 상징이나 표시물의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전시 또는 게시된 간판, 로고, 기타 비즈비츠를 표창하는 표시가 포함된 일체의 저작물, 메뉴판, 인터넷상의 표시, 114 안내 등을 즉시 제거 및 해지한 후 가맹본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직,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가맹본부의 가맹점, 가맹점사업자로 오인 받을 수 있는 행위는 금지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전항의 철거, 원상복구의 비용은 귀하의 귀책사유 또는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계약 종료시 귀하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철거의무를 지체하는 경우에는 지체기간에 대하여 면적(본계약에 명시한 가맹점 면적)곱하기 평당 5,000원씩(매장평수*지체일수*5,000원)으로 산출한 금액을 그 지연 손해금으로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계약의 종료 후 가맹점 사업자가 계속하여 철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를 대신하여 철거 및 원상복귀하고 이에 대한 비용은 가맹점 사업자의 부담으로 한다.이 경우에도 철거및 원상회복 완료시까지의 지연손해금은 면제되지 아니 한다.

5)가맹계약 10년기간 만료에 관한 사항

가맹계약 10년 만료시 가맹계약은 종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가맹본부는 노후되었거나 위생상 문제가 우려되는 가맹점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가맹점 사업자의 요청과 가맹본부의 승인하에 가맹계약을 종료하지 아니하고 매1년단위로 재계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가맹점이 매출부진,인근 경쟁업체의 진입 또는 동일 영업지역내의 상권및 입지변경의 필요성등이 있는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아니하고 종료할수 있습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비즈비즈]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원·부재료(전용상품) : 육류, 소스류등 (전용상품 리스트 참조)

계약시 전용상품 리스트를 제공하고, 확인 서명을 한다. 전용 상품 리스트는 매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원·부재료(전용상품)에 대해 당사가 지정하는자((주)동원홈푸드)의 싸인물 표시를 통해 고객에게 인지하도록 합니다]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하며 본사에서 지정된 규격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다소 변경, 추가할 수 있습니다. 원부자재(전용상품)에 대한 신규,추가건 및 가격변동에 대한 내용은 가맹계약시 체결한 원부자재(전용상품) 신규, 추가동의서, 가격변경 포괄동의서에 의거 동원홈푸드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POS사용에 대해 당사가 지정하는자(협력업체)의 POS 안내창을 통해 가맹점은 최초 로그인시 당사의 공지사항(광고,신메뉴,전용상품,점주 교육등)을 전달 받을 수 있고,출력물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최초 확인자는 점주및 POS를 운영하는 직원으로써, 당사의 공지되는 내용에 대해 확인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당사는 경영환경 변화와 신메뉴 개발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이 추가되거나 사양이 변경될수 있습니다. 변경 시 서면이나 동원홈푸드 게시판, POS, 이메일, 문자, 카톡 SNS 등 기타 통신수단으로 공지합니다.]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 별첨1과 같습니다.

※ 상기 상품은 전년도 상·하한가 기준이며 당해 연도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별도의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비즈비즈]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2) 당사가 [비즈비즈]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별도의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아래> 3)가맹점사업자의 가격결정의 제한 중 <상품명> 참조	가맹본부에서 정한 메뉴이외에는 추가 혹은 삭제하여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서면 시정 요구 2회 위반: 서면 시정 요구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해지 절차는 가맹사업법령에 따라 진행하고 있습니다

	메뉴의 레시피를 무단으로 변경하는 것도 금지됨		
--	---------------------------------	--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품, 메뉴는 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 삭제 될수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거래상대방)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미성년자	주류판매	거래상대방별로 기재된 제품은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 영업정지 7일 2회 위반 : 계약 해지	
다른 가맹점 또는 고객이 아닌 제3자	공급물류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권장가격(단위: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한우채끝등심 스테이크 2인세트	72,800	변동 시 서면이나 이메일, 문자, 카톡 기타 통신수단으로 공지	2023년 9월 기준
안심 스테이크 2인세트	69,800		
살치살규카츠 스테이크 2인세트	52,000		
한우채끝등심 스테이크	46,000		
몽골리안스테이크	39,000		
안심스테이크	39,000		
버터살치살규카츠 스테이크 130g	19,800		
버터살치살규카츠 스테이크 160g	22,800		
살치살 규카츠 스테이크 130g	18,800		

살치살 규카츠 스테이크 160g	21,800		
규카츠샌드(안심) 159g	29,000		
(정식)			
규카츠 스테이크정식으로변경시			
추가요금			
차돌숙주볶음우동	+4,000		
우동	+4,000		
냉모밀	+4,000		
킹쉬림프크림파스타	21,800		
명란크림파스타	17,800		
생 치즈 토마토 파스타	19,800		
빠네크림파스타	21,800		
빠네로제파스타	21,800		
새우관자오일파스타	17,800		
치즈크림파스타	19,800		
해산물토마토파스타	19,800		
봄베이하이볼	12,000		
레몬에이드	4,000		
자몽에이드	4,000		
청포도에이드	4,000		
콜라/사이다/환타	3,000		

▶ 권장가격은 물류시스템 및 (주)동원홈푸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격은 물가 등에 의해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가맹점 사업자간 영업지역이 중복되는 경우 가맹본부는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스테이크를 전문으로 하는 가맹사업	비즈비즈	해당없음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인구 5,000명 당 1점포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점포를 중심으로 500m 제한거리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행정구역당 1점포 단, 특수상권(백화점, 마트, 시장, 지하상가, 공항, 호텔 등)은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지역에서 제외되는 별도의 영업지역이며, 특수상권의 영업지역은 특수상권내로 한정됨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특수 상권이라 함은 백화점, 대형마트, 복합 쇼핑몰, 아울렛, 민자역사, 공항, 지하철역, 터미널, 고속도로 휴게소, 멀티플렉스 영화관, 관공서, 대학교, 리조트, 종합병원 등의 공간내 지 상업시설을 말함.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비즈비즈’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비즈비즈]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차후 신규 확장 사업으로 인한 HMR 제품 또는 밀키트 제품 등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지역을 통해 판매 할 수 있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차후 신규 확장 사업으로 인한 HMR 제품 또는 밀키트 제품은 타 채널(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배달등)을 통해 판매 할 수 있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특수상권은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지역에서 제외되며, 가맹본부는 특수상권에 직영점,가맹점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100%	0%	0%	0%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100%	0%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비츠비츠]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가맹계약 갱신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2]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관련 계약조문
① 을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금의 50%를 갑에게 지급하고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을이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2.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을이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3.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갑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을이 지키지 아니한 경우. 가.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 나.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 다. 갑이 가맹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지식재산권보호에 관한 사항. 라. 갑이 을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훈련 준수에 관한 사항.	제 8조 : 계약기간 및 재계약

다만 을이 부담하는 교육, 훈련비용이 동일한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요구하는 비용보다 현저하게 높은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마. 갑이 제2항에 따른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을에게 거절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갑이 제2항의 거절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을에게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의 가맹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2년씩 자동연장 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을이 계약이 만료되는날부터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거나 갑이나 을에게 천재지변이나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갑이나 을에게 파산·화의 등의 신청이 있거나 회사정리절차 및 강제 집행절차가 개시된 경우. 나. 갑이나 을이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 정지된 경우. 다. 을에게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이 발생하여 더 이상 가맹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된 경우.	
--	--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① 갑 또는 을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60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을 2회 이상 서면통지를 하여 상대방에게 이행 또는 시정을 최고하고, 그 이행 또는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서면에 의한 통지로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에게 제27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1) 을이 2개월에 걸쳐 3회 이상 상품·자재의 대금지급을 연체한 경우 2) 을이 갑의 품질관리기준을 3개월 이내에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3) 을이 가맹점의 운영과 관련하여 갑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합계액이 과다하여 범위를 초과한 경우 4) 을이 갑과의 협의 없이 가맹점 운영을 7일 이상 방치하는 경우 5) 을이 갑의 경영지도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경영지도의 결과 및 개선 방안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6) 을이 노후화된 설비 일체에 대한 교체·보수의 지시를 정당한 이유없이 따르지 않는 경우	제9조 : 계약의 해지

- 7) 을은(가맹점사업자를 포함한 모든 종사자) 본사에서 규정된 복장을 착용 하지 않았을 경우
- 8) 을이 부패, 변질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 9) 을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갑이 공급하는 상품·자재의 품질 및 범위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또는 “전용상품” 일부 및 전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 10) 을이 갑의 승인 없이 갑이 정한 상품을 변경하거나 사전협의 없이 권장가격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 11) 을이 홍보판촉의 내용과 방식을 갑과 사전협의 없이 진행한 경우
2. 갑이 약정된 상품·자재의 공급, 경영지원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을에게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14조 6항 갑이 주체하는 보수교육 및 특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4. 16조 2항 가맹점의 점검사항에는 위생상태, 각종설비관리, 원·부자재관리, 서비스 실태, 고기보관 상태, 육류의 불법 사입 여부, 가맹점 매출 공유 등 기타 가맹점의 원활한 운영에 관련된 사항에 위반되는 경우
5. 20조 5항 갑이 매월 지출한 광고비 중에서 각 가맹계약자가 부담해야 할 광고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6. 23조 4항 을이 부정한 목적으로 갑의 상호, 상표, 서비스표, 휘장 등을 사용하여 갑의 영업상 신뢰를 훼손한 경우
7. 24조 5항 갑이 지정한“전용상품”중 일부를 사용하지 않거나 대체품을 첨가하는 방법으로 조리 또는 판매 할 경우
8. 24조 6항 을은 갑의 동의 없이 공급받은 상품·자재를 제3자에게 재판매, 제공, 또는 대여할 경우
9. 32조 1항, 2항, 3항의 영업상 비밀 공개금지 및 경업금지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10. 가맹점이 고의로 POS 시스템상의 매출을 누락한 경우.

② 갑 또는 을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즉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2.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3.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 가. 가맹점사업자가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한 경우

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한 경우 1) 그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2) 그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3) 그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영업비밀 또는 중요정보를 유출한 경우 5.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이를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과징금·과태료 등의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을 통보받고도 행정청이 정한 시정기한(시정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 6.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7.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8.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9. 가맹점사업자가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는 경우 10.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③ 본계약의 해지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제9조 2항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 정지된 경우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어]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 수정 사유	관련 계약조문
○ 본 계약의 내용은 갑과 을 쌍방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만 변경할 수 있다	제38조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를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해당사항 없음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2개월 전)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가맹본부 (1599-3334)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교육비 및 신규가맹비의50%와 계약이행 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규 가맹 계약은 초기 신규 계약 비용과 동일 하게 비용을 지불 하여야 합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 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상속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비고
상속	본부 승인시 가능	모든 권리의무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상속, 대리행사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상속인, 대리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가맹본부의 계약 수정(5일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대리행사	본부 승인시 가능	본인이정한범위 내의 권리의무		
업무위탁	불가능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을 승인하면,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상속자는 교육비 및 신규가맹비의50%와 계약이행 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자가 원할 경우에는 당사는 상속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규 가맹 계약은 초기 신규 계약 비용과 동일 하게 비용을 지불 하여야 합니다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계약기간 동안 표준고시)

당사는 계약기간중 또는 계약종료후 1년간은 동일한 영업지역에서 [비즈비즈]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가맹계약 위반으로 인해 가맹계약서 제32조6항에 따라 손해배상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비즈비즈]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10:00 ~ 22:00 (12시간)	개점 후 협의	문의: 가맹본부 (1599-333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팀에 서면으로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와 관련하여 점포면적의

유동인구 또는 방문 고객수에 비례하여 주방과 홀의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권장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홀 2명 이상 주방 2명 이상	권장사항	해당 사항 없음	점주의 부재 시 가맹본부에 사전 통보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 · 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당사는 감독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가맹점 매장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비즈비즈]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광고 전체 행사	상품광고 +브랜드광고	광고비의 20%	광고비 80% 중 가맹점 총매출액 비율 따라 산정	광고 계획 공고 → 가맹점의 광고참여 여부 결정 → 가맹점부담액 제시(명세서)	대중매체 광고 명절, Day 이벤트 행사 (전국 행사)
	상품광고+ 브랜드광고+가맹점 모집광고	광고비의 20%	광고비 80% 중 가맹점 총매출액 비율 따라 산정		
	가맹점 모집광고	전액 부담	없음		
판촉행사 전체 행사	할인행사	행사에 따라 유동적		행사계획 공고 → 가맹점부담액 제시 → 가맹점의 행사 참여 결정 → 행사 시행 → 종료 후	

			최종분담금 확정	
	증정 행사	행사에 따라 유동적	"	"

[당사는 가맹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 및 지역 단위의 광고 및 판촉을 가맹점사업자들의 동의를 받아(광고의 경우에는 전체 가맹점의 50% 이상, 판촉의 경우에는 전체 가맹점의 70% 이상) 할 수 있으며, 귀하는 당사가 위와 같이 동의를 얻어 실시하는 전국 규모 혹은 자신이 속한 지역규모의 광고 및 판촉활동에 필수적으로 참여하기로 합니다. 다만 판촉의 경우에는 찬성한 가맹점사업자만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광고와 판촉에 대하여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기로 합니다.]

[전국단위의 광고일 경우 가맹점부담액은 총광고비에 대한 매월 광고비 부담액에 대해 가맹점사업자 수에 따라 고정액으로 분담합니다]

[지역 광고일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부담액 부분을 분담합니다.-본사 20%, 가맹점 80%는 지역가맹점수로 나눕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광고,판촉활동의 내용과 방식에 대해 가맹본부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매장 운영매뉴얼, 조리매뉴얼,接客 매뉴얼, 물류 마진율, 손익계산서, 인테리어매뉴얼,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사업계약 기간 중 습득, 개발, 발명하거나 취득하게 되는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회사의 서면 동의 없이 유출, 발설, 공포하거나 가맹점의 매장 영업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2.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 해지 및 종료 시에 영업비밀이 수록된 서면, 디스켓, 전산 자료, 홍보, 각종 매뉴얼, 업무일지 등을 즉시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3. 영업비밀 보호 의무는 본 계약의 유지기간 동안은 물론 해지 및 종료 후에도 유지된다.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1.가맹계약서 제32조[을의 영업상 비밀 공개금지 및 경업금지 의무]사항에 따라 영업비밀 또는 경업금지 위반시 손해배상금으로 2억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1) 가맹점 사업자는 당사의 동의 또는 승낙 없이 당사가 작성한 교육 매뉴얼 및 세미나자료, 영업 관련 편람 등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 2) 가맹점 사업자는 본 계약기간 중에 당사의 동의 또는 승낙 없이 자신 또는 제3자의 명의로 당사의 영업과 동종의 영업을 하지 못합니다.
- 3) 가맹점사업자가 계약 종료 후 1년간은 동일한 영업지역에서 “갑”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자신 또는 제3자(공동 운영, 직원근무 포함)의 명의로 갑의 영업과 동종의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2.가맹계약서 제9조[계약의 해지]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1)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는 계약기간 중 서면에 의한 당사자의 합의가 아닌 계약위반,일방적 해지등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 해지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위약금:일금 일백만원(1,000,000) * 남은 잔여 개월수

3.가맹계약서 제10조 제5항에 의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제10조 제1항에 규정된 상호, 상표, 서비스표, 휘장, 간판 등의 철거의무를 지체하는 경우에는 지체기간에 대하여 본 계약에 명시한 매장면적 곱하기 평당 5,000원 씩(매장평수X지체일수X5,000원)으로 산출한 금액을 그 지연 손해금으로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갑은 제9조에 의한 계약의 해지 및 즉시계약 해지의 경우 또한 을의 귀책사유에 의한 가맹계약 해지의 경우 가맹비의 반환이 불가합니다.

4. 당해 계약의 당사자는 본 계약서에 기재된 손해배상이나 위약별 규정 이외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본 계약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55일 내외	[12p~16p 참조]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55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가맹계약서 제공	D-54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 계약서 제공	D-44~41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33~34	
가맹금 예치	- 하나은행에 가맹금 예치	D-31~32(1일)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D-29~30(1일)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28~29(1일)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D-27~8(27일)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D-7~4(3일)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다소 그 기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 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비 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 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부담액의 30%, 2차 :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 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	--	--	---	--	--

※당사는 점포환경 개선 비용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해당없음.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
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 고
가맹본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 (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 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 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3]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본부 부담	문의: 가맹본부 (1599-3334)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 (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 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 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3]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 부담 (가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을 초과한 부분에 한함)	문의: 가맹본부 (1599-3334)

4. 신용 제공 등 내역

해당사항 없음.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 해당사항 없음.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비즈비츠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비즈비츠]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 천원)	비고
신규 교육	7일	최초가맹금에 포함	최초 계약시 이수
보수 교육	1일	비용정산후 서면제출	필수적으로 이수
특별 교육	3일	비용정산후 서면제출	필수적으로 이수

* 을은 필요한 경우 자신의 비용으로 갑에게 교육 및 훈련을 담당할 인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됩니다.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기한내 신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점의 개점을 승인하지 않을수 있으며, 가맹계약 해지의 사유가 될수 있습니다.]

[기한내 보수 교육 및 특별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물품의 공급중단 및 가맹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될수 있는 불이익을 받을수 있으니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2			
3			

▶ 당사는 비즈비즈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	-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	-

X. 상담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개설절차



※지점미육회관 개설절차를 거쳐 최종 가맹점이 오픈되며, 본사 수퍼바이저들의 꾸준한 방문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 집니다.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가맹본부(1599-3334)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1]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별첨2] 2023년 2022년 재무제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2021년 재무제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본 확인서는 2부를 작성하여 양당사자가 1부씩 보관합니다.

가맹본부용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및 인근가맹점현황문서 제공확인서

■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인근가맹점현황문서 제공확인

※ 아래 빈칸에 가맹희망자 본인이 직접 자필로 “꼭” 작성하셔야 합니다.

가맹본부	(주)하나에프씨	영업표지	비츠비츠
제공확인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제공받은 경우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제공받았습니다.”라고 작성합니다		
	작성해주세요 ⇒		
제공일시	년 월 일 시	제공받은 장소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영업 중인 가맹점을 아래 표와 같이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합니다.

가맹희망자 장래 점포 예정지 _____

No.	상호	소재지	전 화 번 호
1			
2			
3			
4			
5			
6			
7			
8			
9			
10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제공하였으며, 가맹희망자는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가맹본부 : (주)하나에프씨 대표이사 _____ (인)

가맹희망자: 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

※ 본 확인서는 2부를 작성하여 양당사자가 1부씩 보관합니다.

가맹희망자용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및 인근가맹점현황문서 제공확인서

■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인근가맹점현황문서 제공확인

※ 아래 빈칸에 가맹희망자 본인이 직접 자필로 “꼭” 작성하셔야 합니다.

가맹본부	(주)하나에프씨	영업표지	비츠비츠
제공확인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제공받은 경우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제공받았습니다.”라고 작성합니다		
	작성해주세요 ⇒		
제공일시	년 월 일 시	제공받은 장소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영업 중인 가맹점을 아래 표와 같이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합니다.

가맹희망자 장래 점포 예정지 _____

No.	상호	소재지	전 화 번 호
1			
2			
3			
4			
5			
6			
7			
8			
9			
10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제공하였으며, 가맹희망자는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가맹 본 부 : (주)하나에프씨 대표이사 _____(인)

가맹희망자: 성명 _____서명 또는 (인)